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 자료 제공 -



폐기물 부담금 제품 인상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제품·용기에는 껌, 담배,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07년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전환 예정),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개당 6~16원하던 살충제 및 유독물 용기는 24.9~84.3원으로, l 당 30원 하던 부동액은 189.8원, 갑당 7원하던 담배는 27.8원, 판매가(수입가)의 0.27%이던 껌은 1.8%로, 개당 1.2원하던 1회용 기저귀는 8.2원으로 부담금이 인상되고, 개당 1~4.5원하던 화장품용기는 8.3~25.5원, kg당 3.8원~7.6원하던 플라스틱제품은 328원~384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과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개선요율의 20%('08~'09)→60%('10~'11)→100%('12 이후)

플라스틱 부담금제도 대폭 개선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플라스틱에 대한 부담금 제도도 대폭 개선하였다.

먼저 플라스틱 제품중 실제 재활용되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문제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담하였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는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단계로 사업자가 환경부와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2단계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중간제품(제1차 플라스틱 제품 등)과 최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플라스틱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하여 일부 최종제품에 대한 재활용분담금과의 이중부과 가능성과 수출품에 대한 부과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료투입량(국산제품)과 수입가격(수입제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산출기준도 국내·외 제품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원료투입량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플라스틱 원료를 연간 10톤 이하 사용하는 사업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관리상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1조4천여억원 경제 효과

동 개정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활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재정적 편익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경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부담금 요율인상 및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권장으로 약 110만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될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플라스틱 원료 구입비와 4,000여억원의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어 총 1조4천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플라스틱 원료구입비와 폐기물 처리비 절감액 추정 근거

- 원료구입비 : 플라스틱원료 대체비-재활용비용 = 110만톤 × (1,300천원-327천원) = 10,570억원

- 폐기물처리비 : 처리대상폐기물*처리비 = 82만톤(일반) × 384천원 + 28만톤(건설) × 328천원 = 4,018억원

※ '04년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플라스틱 약 220만톤 중 약 50%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

또한 재정적으로는 부담금인상으로 연간 3~5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전국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 개정안은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제품 책임주의를 강조하는 최근 국제동향에도 매우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 시행 예정

금번 개정안은 정부의 부담금 평가운용평가단, 국회 및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적함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업계 및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지난 6월 27일 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예산처차관)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담금 요율 조정안〉

		판매가(수입가)의 0.27%	판매가(수입가)의 1.8%
검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개당 8.2원
부동액		l 당 30원	l 당 189.8원
살충제 및 유독물		개당 6~16원	개당 24.9~84.3원
화장품		개당 1~4.5원	개당 8.3~25.5원
담 배		20개비당 7원	20개비당 27.8원
플라 스틱	일반 플라스틱	합성수지 투입 kg당 7.6원	합성수지 투입kg당 384원
	건축용플라스틱	합성수지 투입 kg당 3.8원	합성수지 투입kg당 328원

1. 개정이유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의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 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 제품으로 통일(별표 2 및 안 제10조제1항제7호)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제2항제3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안 제10조제2항제3호의 가 내지 라목)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안 제11조)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별표 2 비고 4)

바. 기타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3조제1항)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플라스틱용기 (1) 500ml이하 (2) 500ml초과	개당 24.9원 개당 30.7원	
	나. 유리병 (1) 500ml이하 (2) 500ml초과	개당 56.2원 개당 84.3원	
	다. 금속캔 (1) 500ml이하 (2) 500ml초과	개당 53.9원 개당 78.2원	
2. 화장품	유리병 (1) 30ml이하 (2) 30ml초과 100ml이하 (3) 100ml초과	당 8.3원 개당 12.4원 개당 25.5원	
	3. 부동액	부동액	l 당 189.8원
	4. 껌	껌	판매가의 1.8% (수입의 경우 수입가의 1.8%)
5. 1회용기저귀	1회용기저귀	개당 8.2원	
6. 담배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27.8원	
7.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합성수지 투입 kg당 384원 (단,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관 제품은 합성수지 투입 kg당 328원)	

※ 비고 : 1. 제1호의 경우 출고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동종제품의 용기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급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격제품에 대한 당해연도 업체별 평균 판매 단가 범위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가에 판매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수입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으로 한다. 3. 제7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플라스틱제품의 합성수지투입량은 당해제품에 사용된 재활용한 원료의 양을 제외한 합성수지투입량으로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별표 2(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의 개정요율 및 금액은 2008년 및 2009년에는 100분의 20, 2010년 및 2011년에는 100분의 60, 2012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다만, 현행 부과요율이 연도별 인상요율 보다 높은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